

서울시보

Hi Seoul
SOUL OF ASIA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3083호 2011. 12. 2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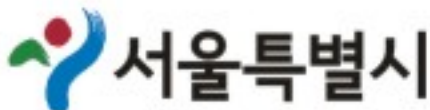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기관의 장		공 람							
선 람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731-6113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1-19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11-198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정의 새로운 정책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실·본부·국의 기구를 “1실 8본부 5국”에서 “5실 4본부 5국”을 개편하고, 부서신설 및 사무조정 등 기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실·본부·국 설치 사항을 반영함.

-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개편한 사항 반영

나. 실·본부·국 산하의 부서 설치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함.

- 복지, 일자리, 도시안전, 기후환경, 마을공동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희망복지지원과, 사회적기업과, 산지방재과, 녹색에너지과, 마을공동체담당관’ 등을 신설하고,
- 업무분야가 축소된 부서 등은 폐지하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하여 부서 간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 기능 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다.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의 하부기관으로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731-6152,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8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에 따라 직종 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본청·사업소간 정원 이관 등 정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분야 사업의 안정화에 따라 본청의 3급 정원을 1명을 감축하고
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4급정원 1명을 증원하고,
다. 한성백제박물관 개관에 따른 유물확보를 위해 일반직을 상계하여 연구직 2명, 은평병원 발달장애아동 치료분야 보강을 위해 별정직을 상계하여 일반직 1명을 증원하며
라.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며 본청·사업소간 정원을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731-6152,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